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5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8누65103 자동차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고, 항소인 | A |
| 피고, 피항소인 | [redacted]시장 |
| 제 1 심 판 결 | [redacted]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2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4. 17. |
| 판 결 선 고 | 2019. 5. 8.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과세부과내역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장철익